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80
----------	-------

발의연월일 : 2024. 5. 21.

발 의 자 : 송기현 · 오영환 · 이형석
조정훈 · 서영석 · 박성준
소병훈 · 김영배 · 용혜인
조오섭 · 최종윤 · 김홍걸
박정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미화원·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 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환경미화원·경비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 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 수 여부</u>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